

[제안 공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 수신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단위

○ 발신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가슴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사)김용균재단,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전국재난참사 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슴기 살균제 참사 / 대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슴기살균제참사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3년 5월 26일

○ 담당 :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010-3222-4551) 4.16재단 (박성현 나눔사업팀장 010-4752-898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맞는 봄이지만, 기후위기로 때 이른 폭염과 홍수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봄은 지난해의 봄보다 더 위험한 봄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외면하고, 시민들은 무관심하고, 법과 제도는 안전한 우리의 일상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월호참사 9년이 지난 봄이지만, 지난 9년 동안 이루어고 했던 “세월호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은 실현되지 못한 탓입니다.

1. 생명존중, 안전 우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안전사회를 외쳐왔지만,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의 안전 관련 시스템과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의 각 단계마다 상황보고와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자들은 자리를 비웠거나 책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미완으로 남았고, 다른 재난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참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재난참사든 산재참사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어떤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참사는 여전히 발생하지만 원인 규명은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책임자들은 발뺌하는 오늘, 다시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안이함과 무책임,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의 안전보다는 비용과 예산을 먼저 고려하는 사고방식, 제도와 법의 미비함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존중, 안전 우선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9년 전 일어났던 세월호참사는 대각성의 계기였습니다. 경쟁과 효율, 돈만 좇으면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뒷전을 미뤄왔던 탓에 자본주의는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어갔고, 이 자본주의를 ‘식인자본주의’라고까지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안전이 비용과 숫자로 치환되는 이 끔찍한 구조를 바꾸어내는 일은 우리가 뒤로만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지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는 달리 안전기본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깨우고 심의부터 제정까지 밀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깨우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입법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2.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안전 문제를 인권, 사람,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 주로 재난관리기구와 그 기능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이재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전의 안전 관련 법률들과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권은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개헌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 재난 관련 수많은 법률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고 피해자의 권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담고, 그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분명히 제시하려고 합니다. 구조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비롯해 재난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완화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럴 때 안전을 위한 규제까지 같이 없애버려 왔습니다.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할 때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각종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객관적·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조사기구는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적이지도 않았고, 전문성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뒤에 매번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기구로는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넷째,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위험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산재와 가슴기살균제참사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대응, 복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진실규명에서부터 복구까지 재난의 전 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기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시민들도 자원봉사로 재난의 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외에 시민들의 참여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도 국가 등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모든 안전 제도와 행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 ‘기업의 책무’, ‘추모와 공동체 회복 추진’, ‘피해자 및 안전약자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 모욕 금지와 처벌’ 등,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법은 이 법을 제정 한 다음에 또는 동시에 제정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이 법안에는 대구지하철참사와 세월호참사, 가슴기살균제참사 등 모든 재난과 산재 참사를 경험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안전사회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각 조문 및 설명 보기 \(https://bit.ly/40HDhw0\)](https://bit.ly/40HDhw0)

▶ [현행 안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 간단 비교 \(https://bit.ly/3KuJNAA\)](https://bit.ly/3KuJNAA)

3. 입법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안전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깨우고 세월호참사 10주기인 내년 4월 이전에 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는 입법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1) 입법운동본부의 기초

① 생명안전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회적경제단체,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범시민적 운동본부를 구성한다.

②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을 망라하고 이 분들이 법 제정의 중심이 된다.

③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단체나 단위가 없도록 입법운동본부에 참여

하는 단위들의 민주적 토론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참여형 운동으로 활동해가면서 광범위하게 생명안전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도록 활동한다.

2) 입법운동본부의 조직

① 조직은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지 않게 구성하고, 결정된 사항들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② 단체 실무자들과 전문가, 자원하는 시민들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을 책임지도록 한다.

③ 피해자 단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활동은 이들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한다.

④ 국회 입법을 위해 국회 내 우호적인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3) 입법운동본부의 활동

① 시민 캠페인;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
예) 사랑하는 가족·친지에게 안전을 선물하세요 캠페인, 생명안전 시민제안대회, 시민들이 만든 안전정책 박람회 등

② 계속되는 참사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

예)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4.16재단이 기획 중임) 등

③ 참사 피해자들이 말하는 생명안전 증언대회 등

④ 연속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점검 등

⑤ 입법 촉구를 위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

⑥ 기타 각 단위 및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4) 입법운동본부의 재정

① 참가 단위 분담금을 기본으로. 예전의 연대체를 구성할 때의 관례를 적용하여 참여단위의 분담금을 책정

② 개인 참여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함

③ 필요시 시민 모금도 기획할 수 있다.

4. 입법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일정 제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지난 2022년 하반기에 3차례 진행하였고, 지난 3월부터 초동모임, 준비모임 등을 거쳐 전체 대표자 회의, 발족식 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① 전체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 5/31(수) 오전 10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② 발족식 겸 기자회견 : 5/31(수) 오전 11시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2023년 5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참여 단체 드림